

Korean Tax Update

September 2018, Issue 51

[조세뉴스]

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전문보기]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었음.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전문보기]

9월26일,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실천방안을 마련함. 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내 신속처리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할 예정임. 또한 사건 접수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 배정하여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하는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계획임.

[예규·판례]

[판례1]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 두 43590 판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단서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자체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만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단서규정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문언이 없는 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자체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 두 56575 판결

- 원고가 2007년에 회사의 이사로 입사하면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그 돈의 지급의무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분쟁이 종결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 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급여에 해당하고, 그 소득은 2012년에 이르러 권리가 확정된 것임.

[판례3]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 다 239850, 2015 다 205420 판결

-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 그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이때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례4] 잔금 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 두 38345 판결

-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된 사안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따라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통상 및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1] 건축물 취득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가능 여부

조심 2018 지 0516, 2018. 7.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감면 규정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건축물 취득 이후 이루어진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은 청구법인의 신청을 검토하여 인증된 것일 뿐 취득일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건축물은 감면 대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됨.

[심판례2]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매립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283, 2018. 7. 26.

-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비록 금전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금전 대신 부동산 등 물건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채권액이 된다 할 것인바, 매립부지의 원시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광역시라는 점이 명백하여 승계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원시취득자가 지출한 건설비의 취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매립부지 조성공사비용 중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비용을 투자하도록 협약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한 매립부지는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통해 생성된 전체 매립부지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광역시로부터 받을 채권액은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립부지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3]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자동차를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조심 2018 지 0297, 2018. 8. 1.

- 「지방세법」 제7조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차량의 경우 그 제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취득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 자동차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립·제작한 자동차는 “타인”이 조립·제작하여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4]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조심 2018 지 0232, 2018. 8. 14.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34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단서에서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대해석하면 위 두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령과 유사한 법 규정 형식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경우에는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쟁점법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5]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승계 가능 여부

조심 2018 서 1802, 2018. 8. 27.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 이 건 합병 당시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적격합병과는 달리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세무조정사항)

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적격합병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는 기존 유권해석(서이46012-10396, 2001.10.20.)은 2010년 합병세제 개편 이전의 법인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합병시점이 합병세제 개편 이후인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의 쟁점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례6]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품설명회 비용이 접대비인지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조심 2016 서 3407, 2018. 9. 4.

- 의료기기의 경우 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법」등에서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사용자들에게 제품설명회를 통해 대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일한 판매방법이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시간 중 제품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동종 법인들의 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거래규약 및 이를 반영한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한 내부결재와 승인을 거쳐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심판례7]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너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2586, 2018. 9. 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너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신규 가입 및 약정기간의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는 사실 등 고려할 때, 상품권은 유선상품의 제공과는 별도로 고객의 이탈 방지 및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사용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변경을 신고 내지 인가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할인된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요금의 할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을 판매촉진비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매출 에너리로 보기 어려움.

[심판례8]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2127, 2018. 9. 13.

-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시 주식회사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런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경우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1]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서면-2017-상속증여-3206, 2018. 7. 20.

- 공모주 청약에 위해 본인이 받은 대출금을 가족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하여 청약하고 공모주를 미배정 받아 2일 후에 환불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예규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2018. 7. 2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개정으로 2016.1.1.부터 본사도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므로 본 질의는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됨.

[예규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최대주주 판단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 8.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최대주주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 본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쌍방관계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증여자 기준의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예규4]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후, 부도발생으로 대출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2018. 8. 21.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규5]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서면-2018-부동산-1722, 2018. 8.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함.

[예규6]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8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